

장난감도서관의 정체성 및 운영 실태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Identity and Administration of Toy Library in South Korea

이 종 문(Jong-Moon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장난감도서관 운영 실태 분석 |
| II. 이론적 고찰 | 1. 조사내용 및 기준 |
| 1. 장난감도서관의 정체성 | 2. 조사대상 및 방법 |
| 2. 장난감도서관의 법적 근거 | 3. 분석결과 |
| 3. 선행연구 | IV. 결론 및 제언 |

초 록

본 연구는 장난감도서관의 정체성과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전체 51개 장난감도서관 중 도서관법에 의해 설립된 곳은 9.8%(5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자치단체의 장난감도서관 조례(45%) 또는 법적 제도와 관계없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설립 목적의 경우에도 82.4%가 장난감 대여와 놀이 자료 제공 및 프로그램 보급, 문화 활동 서비스로 나타날 정도로 도서관법 제2조의 1, 2, 3항의 정의에 따른 동 법에서 말하는 도서관과는 그 정체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도서관법상의 법적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작은도서관 기준으로 건물면적은 96.1%가, 열람석은 92.3%가, 보유 자료는 45.1%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서배치의 경우는 배치한 곳이 13.7%에 불과하였다. 셋째 예산의 경우 대부분이 소요 예산의 70%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자치단체들이 제정하는 장난감도서관 관련 조례 근거에 도서관법을 포함할 것을 제언하였다. 둘째 장난감도서관들이 도서관법상의 법적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서관법에 의해 등록할 것을 제언하였다. 셋째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예산을 현실화하여 지원할 것을 제언하였다.

키워드: 장난감, 장난감도서관, 장난감대여점, 장난감세상, 작은 도서관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oy libraries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identity and administration of toy library and so to propose the approaches to improve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status of toy library.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only 9.8%(5) of 51 toy libraries in Korea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Libraries Act. Most toy libraries were established and operated without any basis on legal institutions or toy library ordinances of local authorities(45%). The purposes of establishment were different from the identity of toy library specified in the provisions of Clause 1, 2 and 3, Article 2, Libraries Act, as 82.4% of toy libraries was established for rental of toys, providing game data and cultural activity service and distributing game programs. For the legal registration standards based on the Libraries Act, it was found that 96.1% exceeded the floorage requirements, 92.3% exceeded the seating requirement and 45.1% exceeded the collection requirement on the basis of the small libraries. Only 13.7% employed the librarians. Next, most toy libraries secured just 70% of the required budget.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d the local authorities to establish the ordinances related to toy library on the basis of the Libraries Act. Next, it was also proposed for the toy libraries to register themselves in accordance with the Libraries Act for securing the legal status. Finally, the local authorities need to rationalize and support the budgets for rationalizing the administration of toy libraries.

Keywords: Toys, Toy libraries, Toy rental shops, Toy world, Small libraries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mlee@ks.ac.kr)

• 논문접수: 2013년 7월 31일 • 최초심사: 2013년 9월 2일 • 게재확정: 2013년 9월 10일

I. 서론

장난감도서관은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에 설립되었으나 시작은 19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¹⁾ 1935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장난감대여도서관(Toy lending libraries)이 운영되었을 정도로²⁾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다가 1963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레코텍(lekotek)이 결성되고,³⁾ 1969년 미국의 G. Nimnicht에 의해 장난감도서관 프로그램이 제안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72년 영국에서 장난감도서관협회(TLA)가 설립되면서 유럽을 선두로 세계에 확산되기 시작하여 세계장난감도서관협회(ITLA: International Toy Library Association)가 설립되었으며, 이 협회에 의하면 2013년 6월 현재 세계 60개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김후리다 박사가 1982년 9월 구로구 향동에 있는 성베드로교육센터에 장애아동 조기교육을 목적으로 레코텍 코리아(Lekotek Korea)를 설립하면서 장난감도서관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나,⁵⁾ 그다지 확산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서울시 성동구를 시발로 자치단체들이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확산되어 2012년 현재 전국에 최소 113개관,⁶⁾ 최대 158개관이⁷⁾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난감도서관이 주목받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핵심은 장난감을 매개로 하는 <놀이>가 주는 유용성 때문이다. 왜냐하면 장난감 등을 매개로 하는 놀이는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강조될 정도로, “오랫동안 어린이의 지능, 운동신경, 인격, 사회성 발달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의력, 건강한 두뇌, 자신감, 쾌활함, 건강과 체력의 발달과 관련되어 있고,”⁸⁾ 이런 연유로 부모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 1) Robat Powell and Nia Seaton, *A Treasure Chest of Service : the Role of Toy Libraries Within Play Policy in Wales*(Slough : NFER, 2007), p.5.
- 2) Julia E. Moore, *A History of Toy Lending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Since 1935*(Master's Research Paper, Kent State Universit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95), pp.1-2, [cited 2013. 6. 20].
- 3) 레코텍(lekotek)은 스웨덴어로 “lek”는 “놀이”를, “tek”은 “도서관”을 의미한다.
- 4) ITLA Home page. <<http://www.itla-toylibraries.org/pages/home/>> [cited 2013. 6. 20].
- 5) 장경희, “한국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부모교육연구, 제5권, 제2호(2008), p.85.
- 6) 유혜미, 양미선, 송신영, 지역사회내 육아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서울 : 육아정책연구소, 2012), p.57.
- 7) 김수정, 전국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실태와 발전 방안 연구(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2013), p.12.
- 8) National Association of Toy and Leisure Libraries, *Toy Libraries their Benefits for Children, Families and Communities*(London : Capacity and Play Matters, 2007), p.4.
<<http://www.ncb.org.uk/media/195173/capacityreportjune07.pdf>> [cited 2013. 6. 20].

문제는 정체성이다. 장난감도서관의 주된 자료는 <장난감>이고, 서비스는 장난감 대여와 장난감을 매개로 하는 <놀이 프로그램>과 이것과 관련한 부모교육 등이다. 물론 도서와 시청각자료 등 도서관법에서 말하는 도서관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난감도서관도 있으나, 핵심 자료와 서비스가 장난감이다. 반면 도서관법에서 말하는 도서관의 주된 자료는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자료”이고, 서비스는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독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이다.”(도서관법 제2조의 2).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도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래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은 동 법(또는 관련 도서관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장난감도서관은 (극히 일부가 도서관법이 정하는 도서관의 요건을 갖추어 도서관으로 등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아동복지법 등을 근거로 자치단체가 제정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장난감도서관은 도서관법에서 말하는 도서관과 그 정체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도서관법 역시 도서관자료와 서비스에 장난감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문헌정보학분야의 그간의 연구를 보면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난감도서관의 정체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장난감도서관의 정체성을 관련법과 학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둘째 도서관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서관의 법적 요건 등을 토대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그런 다음 문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는 장난감 관련 서비스를 검토하려는 어린이도서관과 조례를 제정하여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하려는 자치단체, 도서관법에 의해 도서관으로서의 법적 위상을 갖추려는 장난감도서관과 도서관법 입법자들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고찰

1. 장난감도서관의 정체성

우리나라는 도서관법을 기본법(基本法)으로 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서관법상의 정의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도서관법⁹⁾ 제2조의 1항에서 도서관을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

9)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main.html>> [인용 2013. 6. 22].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4권 제3호)

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2항에서 도서관자료를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 포함)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3항에서 도서관서비스를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시설을 도서관으로 개념 짓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장난감도서관이 도서관법에서 말하는 도서관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동 법 제2조 1, 2, 3항의 정의에 합당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법 제2조의 1, 2, 3항의 정의를 바탕으로 장난감도서관의 도서관적 정체성을 살피고자 한다. 첫째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면,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서는¹⁰⁾ “대출용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키 피디아에서는¹¹⁾ 장난감도서관을 “장난감, 퍼즐, 게임들을 빌려주거나 임대해주는 렌탈샵 또는 가족 자원 프로그램 형태로 기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관련 단체들의 정의를 보면, WAATL(Western Australian Association of Toy Libraries)은¹²⁾ 장난감 도서관을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이들의 발달과 놀이를 통해 학습을 장려하도록 디자인된 다양하고 많은 양의 질 좋은 장난감, 퍼즐, 게임을 빌릴 수 있는 장소”로 개념 짓고, “이러한 장난감, 퍼즐, 게임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것처럼 빌려서 가정이나 그룹 환경에서 즐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도서관협회 장애인서비스위원회는¹³⁾ “장난감도서관의 목적은 장난감으로 노는 것, 장난감도서관에서 다른 아이들과 접해 봄으로써 어린이의 발달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또한 장애아가 가진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육아정책연구소는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장난감을 대여해 줌으로써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다양한 놀잇감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목적을 지닌다.”¹⁴⁾고 하였다. 김수정은¹⁵⁾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 대여 또는 함께 놀이하는 기회를 주는 곳이다.”라며, “장난감도서관에서는 숙련된 직원과 전용 공간을 통해 놀이를 위한 환경이 제공되고, 아동발달과 교육에 대한 각종 정보를 나누는 등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국제장난감도서관협회는 홈페이지에서 이러한 장난감도서관은 “개인,

10) 도쟁이 홈페이지, <http://203.241.185.12/asd/read.cgi?board=Dic&y__number=10347> [인용 2013. 6. 22].

11) Wikipedia Home page, <http://en.wikipedia.org/wiki/Toy_library> [cited 2013. 6. 24].

12) WAATL, *A Guide to Starting and Running a Community-Based Toy Library*, 2010, p.4-5.
<<http://www.toylibrary.asn.au/downloads/Manual-setting-up-and-running-a-toy-library.pdf>> [cited 2013. 6. 24].

13) 일본도서관협회 장애인서비스위원회 편, 도서관운동연구회 역,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서울: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00), pp.114-115.

14) 유혜미, 양미선, 송신영, 전계보고서, p.95.

15) 김수정, 전계논문, p.5.

자선단체, 지역, 지방 또는 국가적 정부 또는 다른 기관, 그룹에 의해 운영될 수 있다.”며, “자선단체 또는 정부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장난감 도서관은 대부분 무료 또는 아주 적은 회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장난감 도서관은 요금을 청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셋째 자치단체들이 제정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관련 조례 포함)에 나타난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정의와 기능을 통해 정체성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①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한 21개 자치단체의 조례(2013년 6월 현재)에 나타난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정의를 분석한 결과, 장난감도서관을 “장난감·도서·시청각자료 및 그 밖의 물품(육아용품 등)을 이용·대여·대출하는 시설” 71.4%(15개 지자체), “장난감을 대여하는 시설” 23.8%(5개), 무정의 4.8%(1개)로 <표 1>과 같다.

<표 1>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상의 장난감도서관 정의

구분	빈도 수(%)
장난감·도서(또는 시청각자료) 및 그 밖의 물품(육아용품 등)을 이용·대여·대출하는 시설	15
장난감을 대여하는 시설	5
기타(무정의)	1
계	21

②다음으로 조례를 통해 기능을 보면, 장난감도서관 관련 조례를 제정한 21개 자치단체 중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을 명시한 12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능을 분석한 결과, ①장난감의 구매·정리·분류·보관·보존·축적 100%(12개), ②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 100%(12개), ③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66.7%(8개), ④(영유아) 관련 도서(또는 시청각자료) 등의 구매·정리·분류·보관·보존·축적 4.7%(5개)로 나타날 정도로 장난감과 이와 연계된 놀이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에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표 2> 참조).

<표 2>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상의 장난감도서관 기능

구분	빈도 수(%)
장난감의 구매·정리·분류·보관·보존·축적	1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	12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8
(영유아) 관련 도서(또는 시청각자료) 등의 구매·정리·분류·보관·보존·축적	5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 공간 제공 및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2
공연회·전시회 기타 문화 활동 등	2
계	41

이상에서 살펴보면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 놀이 자료와 정보(및 도서, 시청각자료)를 수집하여 대여하는 것(이것을 통해 아동들의 장난감 선택을 돕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입비용을 절감해주는 것), 장난감을 매개로 놀이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 관련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4권 제3호)

램을 운영하는 것 등을 통해 아동들의 발달과 성장, 학습적 역량을 돕는데 목적과 기능을 둔 시설이다. 따라서 장난감도서관이 영유아를 위한 도서, 시청각자료 등 도서관적 자료와 관련 서비스 환경을 갖추고 도서관법에 의해 등록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에서 말하는 도서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난감 서비스에 목적과 기능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서관법상의 도서관으로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장난감도서관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현행 도서관법은 제2조의 4, 5, 6, 7항에서 도서관의 유형을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으로 구분하고, 제27조 1항 등에서 도서관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보면, 첫째 법제 2조의 4항에서 공공도서관을 공립 공공도서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과 사립 공공도서관(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 구분하고, 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5조 2항에 따른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표 3>과 같이 정하고 있다. 또 제4조의 1항에서 법 제6조 1항에 따른 사서배치 기준을 <표 4>와 같이 정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도서관법은 봉사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국제적 기준과 달리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기준으로 최소 요건의 개념에서 법적 기준을 정하고 있다.)

<표 3>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 관련)

구 분	봉사대상인구	시설		기계·기구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제곱미터)	열람석 (좌석수)		기본장서(권)	연간증서(권)
공공도서관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	3,000 이상	300 이상
	2만 이상~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	6,000 이상	600 이상
	5만 이상~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	150,000 이상	15,000 이상
나. 사립 공공도서관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작은 도서관	-	33제곱미터이상	6석 이상	-	1,000권 이상	
라. 장애인 도서관	-	66제곱미터 이상 자료열람실 및 서고의 면적: 면적의 45퍼센트 이상	-	1. 점자제판기 1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3. 점자타자기 1대 이상 4. 녹음기 4대 이상	장서 : 1,500권 이상 녹음테이프 : 500점 이상	
전문도서관	-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분야 자료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3천점) 이상	

〈표 4〉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배치기준
공공도서관(사립 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작은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장애인도서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둔다.
전문도서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은 공공도서관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따라서 어떤 유형의 도서관이든 법적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하고(도서관법은 제11조), 사립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 등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래야 도서관법상의 법적 위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난감도서관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2004년 7월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처음으로 장난감세상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¹⁶⁾ 2013년 5월 현재 21개 자치단체가 장난감도서관 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가 12개, 장난감대여센터(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9개로 〈표 5〉와 같이 파악되고 있다.

〈표 5〉 장난감도서관 관련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자치단체명	공포일	관련근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	서울특별시용산구	2011.12.30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2009.11.17	-
	경기	경기도남양주시	2013.01.07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경기도포천시	2012.04.06	「영유아 보육법」 제4조 제2항
		경기도하남시	2011.10.18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
	충남	충청남도아산시	2012.06.15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경남	경상남도진주시	2012.12.21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
	경북	경상북도경주시	2010.11.16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
	전남	전라남도진도군	2012.11.21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전라남도광양시	2012.04.12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
		전라남도순천시	2008.09.29	-
	전북	전라북도완주군	2009.10.09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query=%EC%9E%A5%EB%82%9C%EA%B0%90%EB%8F%84%EC%84%9C%EA%B4%80>〉 [cited 2013. 6. 26].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4권 제3호)

장난감나라/ 세상/대여센 터(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	서울특별시성동구 (장난감세상)	2004.07.12	-
		서울특별시중랑구 (장난감대여센터)	2009.05.19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 (장난감대여점)	2009.02.05	-
		서울특별시구로구 (장난감대여센터)	2004.12.18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
	인천	인천광역시남동구 (장난감대여점)	2012.05.14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난감대여점)	2010.02.22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경기	경기도오산시 (장난감대여점)	2010.05.10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
		경기도안산시 (장난감나라)	2008.08.04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
	충북	충청북도청원군 (장난감대여센터)	2012.10.20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

하지만 제정된 조례들은 도서관법이 아닌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등에 근거하고 있고, 근거 법률 역시 도서관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 근거 법 조항을 보면, 영유아보육법은 제4조의 ②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제4조의 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제144조의 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②에서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들은 영유아육법, 아동복지법,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에 의해 장난감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법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선행연구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문헌정보학분야에서의 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타의 분야에서 그간 이루어진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보면, Dockrell과 wilkinson은 스코틀랜드의 두 도시에 있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운영자, 이용자 등을 심층 면담하여 장난감 도서관이 사용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역할과 장난감 도서관의 궁극적인 목표와 실체에 대해 연구하였다.¹⁷⁾ Moore는 장난감 도서관의 역사와 이용자(아이들, 부모, 보

육자, 선생님, 놀이치료사)들에게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프로그램에 관해 연구하였다.¹⁸⁾ 그는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도서관의 종류를 커뮤니티 장난감 도서관(communitiy toy library), 보조 장난감 도서관(supplemental toy library), 이웃 협력 장난감 도서관(the cooperative neighborhood toy library), 움직이는 장난감 도서관(mobile toy library)으로 구분하고, 미국과 여러 국가들(Sweden, Norway, United Kingdom, Canada, Netherlands, Australia, Switzerland, France, Russia, Israel, Nigeria, and India)의 장난감 도서관을 고찰하였다. 또 부록으로 장난감 대여 도서관의 통계를 수록하였다.

Mayfield는 스웨덴, 영국, 캐나다, 호주에 있는 32개의 장난감 도서관의 프로그램 모델, 후원 및 위치, 프로그램의 목표, 참가자, 인력, 장난감과 자료, 프로그램 운영방식, 인식 효과, 문제점 등을 연구하였다.¹⁹⁾ 결과 비록 이들 네 국가의 프로그램들은 기원, 후원, 고객, 자금, 규모, 인력에서 모두 다양성을 보였지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장난감과 자료, 문제점에서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lik와 Csikar는 SSWB(Sure Start West Bowling) 서비스 현지 평가를 하였다.²⁰⁾ SSWB 서비스의 목적은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놀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의 어린이와 성인에게 좋은 품질의 장난감, 활동 및 정보의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의 목적은 이 서비스가 목적에 부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SSWB에 의해 정의된 목적에 따라 지역 사용자를 돕기 위한 부가적인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沈劍娜는 장난감 도서관의 유래와 발전 과정을 되짚어보고, 그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와 특수한 집단 속에서 운용되고 기능하는 바에 대하여 연구하였다.²¹⁾

김수정은 전국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담당인력, 자료 및 정보자원, 시설 및 환경 영역의 실태를 파악하였다.²²⁾ 전국 158개의 비영리 장난감도서관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장난감도서관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국가·지방자치단체 설립 후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사회·장애·아동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았다. 회원은 500명 미만을 보유하고 평일 하루 20~50명 미만, 주말 하루 20명 미만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장난감·도서대여, 교육프로그램, 문화공연 및 행사 등이었다. 담당인력은 3명 이하로 구성된 곳이 많았다. 자료 및 정보자원은 5백~1천개 미만의 발달흥미영역별 장난감을

17) Julie Dockrell and J. Eric wilkinson, "Toy libraries: what's in a nam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Vol.49, No.1(May 1989), pp.27-36.

18) Julia E. Moore, *op. cit.*, pp.1-46.

19) Margie I. Mayfield, "Toy libraries: Promoting play, toys, and family support internationall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Vol.87, Issue 1(January 1993), pp.1-13.

20) Abida Malik, Julia Csikar, Sure Start West Bowling Local Evaluation of Toy Library
<http://www.ness.bbk.ac.uk/support/local-evaluation-findings/documents/1080.pdf> [cited 2013. 6. 28].

21) 沈劍娜, "儿童玩具图书馆的发展及其社会服务功能的探讨," *图书馆理论与实践*, 2013. 3, pp.16-18.

22) 김수정, 전계논문, pp.1-94.

보유한 곳이 많았고, 시설 및 환경 부분에서는 자료/대여실로 구성된 132.23㎡ 미만의 소규모 기관이 많았다.

장경희는 장난감도서관의 동향을 알아보고, 19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장난감도서관의 발전과 유지에 필요한 기본방향에 대하여 제안들을 되짚어 보았다.²³⁾ 결과, 장난감도서관은 지역사회서비스, 부모서비스, 아동서비스 면에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운영자금은 정부보조금, 회원가입비 및 이용료, 법인의 지원, 수입사업과 기증,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직원구성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비자격자, 특수교사, 상담 및 치료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었으며 장난감도서관의 공간은 대여실, 놀이방, 세척실, 상담실, 자료실 및 열람실과 프로그램 진행공간으로 구성되어져 있었다. 운영체제는 법인이나 재단 자체에서 설립, 복지관에서 운영,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 위탁 운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 개인이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은 운영주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장난감대여, 부모교육, 장애아동과 가족관련 프로그램, 이동차량 운영 및 놀이프로그램과 교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동윤진은 영·유아 및 어린이의 교육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린이도서관 및 장난감도서관의 기능 및 이용실태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²⁴⁾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2곳과 유치원 2곳을 선정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린이 도서관이 장난감도서관에 비해 그 이용여부 빈도에 있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횟수, 장래 이용횟수와 이용사유에 있어서는 양 도서관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반면 이용시간대 등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희는 전라북도 I시에 위치한 2개 어린이집의 만 2세 영아 28명을 대상으로, 영아교육기관에서 놀이감 대여 프로그램을 고안, 어머니-영아의 놀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과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²⁵⁾ 결과 첫째, 놀이감 대여 프로그램은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양적, 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으로, 둘째, 놀이감 대여 프로그램은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양적, 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으로, 셋째, 놀이감 대여 프로그램은 영아의 정서지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놀이감 대여 프로그램이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 증진 및 정서지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접근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23) 장경희, 전게서, pp.79-100.

24) 동윤진, 어린이 도서관과 장난감 도서관에 대한 실태 및 부모인식조사(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 2009), pp.36-61.

25) 최은희, 놀이감 대여 프로그램이 어머니-영아 상호작용과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2011).

Ⅲ. 장난감도서관 운영 실태 분석

1. 조사내용 및 기준

우리나라는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래, 동 법을 기본법으로 도서관을 설치·운영해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내용 및 기준을 크게 도서관법상의 도서관에 대한 정체성과 등록요건을 기준으로 한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실태와 도서관적 관점의 여타의 운영 실태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하였다 (<표 6> 참조).

<표 6> 장난감도서관 운영실태 조사표

구분	조사내용
도서관법상의 정체성 및 기준관련 장난감도서관 운영실태	1. 도서관적 정체성 관련 실태 - 장난감도서관의 설립 법적 근거 - 장난감도서관의 설립 목적과 기능 - 장난감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주체 - 장난감도서관 건물 소유 실태 2. 도서관법상의 도서관 요건 관련 실태 - 장난감도서관의 건물면적 실태 - 장난감도서관의 열람석 보유 실태 및 요구 수준 만족도 - 장난감도서관의 자료보유 실태 - 장난감도서관의 연간평균 자료증서와 자료구입비 현황 - 장난감도서관의 사서배치 실태
도서관 관점의 여타 장난감도서관 운영 실태	- 연도별 장난감도서관 설립 현황 - 장난감 도서관의 월 평균 영유아 이용 실태 - 장난감 도서관의 예산 확보 방법 및 확보 수준 - 장난감도서관의 자원봉사 운영 실태

2. 조사대상 및 방법

관련 선행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2012년 현재 최소 114개관, 최대 158개관의 장난감도서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소가 파악된 70여개의 장난감도서관을 조사·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항목에 대하여 서면과 면접, 홈페이지 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데이터 수집은 2013년 6월 7일부터 7월 7일까지 1개월간 이루어졌다. 수집된 데이터는 51개이며, 전체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3. 분석결과

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현황

우리나라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index.do>)을 운영하여 제반 도서관 현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 등록된 장난감도서관은 2013년 6월 현재 3개관[소꿉놀이 장난감 작은도서관(광주), 하늘소 장난감 도서관(경기),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경남)]에 불과할 정도로 현황이 파악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먼저 육아정책연구소가 조사한 것을 보면,²⁶⁾ 2012년 현재 전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은 114개이고, 어린이도서관은 83개이다.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 24,677명 당 1개관이고, 어린이도서관은 영유아 33,894명당 1개관이다. 지역별로는 장난감도서관은 대도시지역(구) 65.8%, 중소도시지역(시) 29.8%, 읍면지역(군) 4.4%로 대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어린이도서관은 대도시지역(구) 44.6%, 중소도시지역(시) 51.8%, 읍면지역(군) 3.6%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음으로 김수정이 한국장난감도서관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와 인터넷 자료 등을 종합하여 장난감도서관 현황을 조사한 것을 보면,²⁷⁾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장난감도서관은 2012년 현재 158개로 파악되고 있다. 장난감도서관 1기관 당 지원 영유아 수는 평균 21,698명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영유아 도서관 현황(2012년 현재)

구분	육아정책연구소 조사			김수정 조사			
	장난감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영유아수	지역	장난감도서관	영유아수 (5세미만/2010 통계청자료)	장난감도서관 1관 당 지원 영유아 수
서울	36	16	502,766	서울	39	397,667	10,197
부산	13	2	156,472	경기	37	599,224	16,195
대구	4	4	124,198	인천	18	125,447	6,969
인천	15	11	158,758	부산	14	124,410	8,886
광주	2	2	87,003	경남	8	154,821	19,353
대전	3	1	89,215	경북	8	109,013	13,627
울산	5	1	67,754	전남	6	73,548	12,258
경기	18	29	784,040	광주	6	73,014	12,169
강원	5	1	75,635	대구	5	101,667	20,333
충북	1	3	87,291	대전	4	71,984	17,996
충남	1	2	123,274	충남	4	97,608	24,402
전북	0	1	97,233	울산	3	54,555	18,185
전남	2	2	96,196	강원	2	61,847	30,924
경북	4	1	136,529	전북	2	77,197	38,599

26) 유해미, 양미선, 송신영, 전계보고서, pp.57-70.

27) 김수정, 전계논문, p.12.

경남	4	5	192,054	제주	1	27,824	27,824
제주	1	2	34,791	충북	1	69,258	69,258
계	114	17	843,003	총계	158	2,219,084	30,940.13

이처럼 동일 연도를 기준으로 한 조사임에도 현황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장난감나라/세상/대여센터(대여점)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시설 중 어느 것은 장난감도서관에 포함하고 어느 것은 포함하지 않은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장난감도서관 혹은 동일 또는 유사개념[장난감나라/세상/대여센터(대여점)]을 갖는 장난감도서관 시설이 전국적으로 최소 114개관에서 최대 158개관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장난감도서관이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는 여러 있겠으나, 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점, 신세계와 같은 대기업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연계하여 장난감도서관 설치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신세계 희망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사회조직체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의하면, 신세계 희망장난감도서관은 2012년 기준으로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대구종합사회복지관, 광주종합사회복지관, 부산종합사회복지관, 전북종합사회복지관, 나주종합사회복지관, 중탑종합사회복지관, 포항종합사회복지관, 진주평거종합사회복지관,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 대전종합사회복지관, 연수종합사회복지관 등 전국적으로 12개관이 설치되어 21,251명이 이용하고²⁸⁾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 법적 도서관 요건 관련 실태

1) 도서관적 정체성 관련 실태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법 제2조의 1, 2, 3항의 도서관에 대한 정의(도서관, 도서관자료, 도서관서비스), 제4조의 도서관 발전 및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 의무 등을 토대로 장난감도서관의 도서관적 정체성을 파악하였다.

장난감도서관이 어떤 법을 근거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장난감도서관의 설립 법적 근거

구분	응답 수	비율(%)
도서관법(도서관법에 의해 등록)	5	9.8
자치단체의 장난감도서관 조례	23	45.0
사회복지법	3	6.0
기타(법적 제도와 관계없이 설립)	20	39.2
계	51	100

전체 51개를 대상으로 장난감도서관의 설립 법적 근거를 분석한 결과, 자치단체의 장난감도서관

28)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홈페이지, <<http://welfare.childfund.or.kr/inBiz/toyLibrary.do>> [인용 2013. 6. 30].

조례 45%(23개), 기타(법적 제도와 관계없이 설립) 39.2%(20개), 도서관법(법에 의해 등록) 9.8%(5개), 사회복지법 6%(3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난감도서관은 도서관법을 근거로 설립 운영되는 여타의 도서관과 달리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제정한 장난감도서관 조례 또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 및 복지를 담당하는 보육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이 자신들의 사업방향에 따라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타의 일반적 도서관과 설립 법적 근거가 다르다는 말이다.

장난감도서관들이 어떤 목적과 기능을 위해 설립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복수응답)를 분석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장난감도서관의 설립 목적과 기능

구 분	응답 수	비 율(%)
영유아 장난감 수집 및 대여	51	33.3
영유아 놀이 자료 및 정보 수집, 제공	21	13.7
영유아 도서자료 수집, 제공	12	7.8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30	19.7
시청각자료 수집, 제공	6	3.9
문화 활동 서비스	24	15.7
기타(부모 경제부담 절감, 부모교육 등)	9	5.9
계	153	100

전체 51개를 대상으로 장난감도서관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분석한 결과(복수응답), ① 설립 목적과 기능에서는 장난감 수집 및 대여 33.3%(51개),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19.7%(30개), 문화 활동 서비스 15.7%(24개), 영유아 놀이 자료 및 정보 수집, 제공 13.7%(21개) 순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도서자료 수집, 제공은 7.8%(12개)에 불과하였다. 분석결과에서 보듯 장난감도서관은 대부분이 장난감 대여와 놀이 자료 제공 및 프로그램 보급, 문화 활동 서비스를(전체의 82.4%) 설립 목적과 기능으로 하고 있다. 도서관법 제2조의 1, 2, 3항의 정의에 따른 동 법에서 말하는 도서관과는 그 정체성에 차이가 있다.

장난감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 주체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장난감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주체

구 분	응답 수	비 율(%)
국가, 자치단체(시, 군, 읍, 면) 설립 운영	15	29.4
비영리 공익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적 조합)	33	64.7
개인	3	5.9
계	51	100

전체 51개를 대상으로 장난감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주체를 분석한 결과, 비영리 공익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적 조합) 64.7%(33개), 국가, 자치단체(시, 군, 읍, 면) 29.4%(15개), 개인 5.9%(3개)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장난감도서관이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의 대부분이 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고, 이들 시설의 대부분이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나 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 뿐만 아니라, 비영리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 역시 공공도서관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누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장난감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장난감도서관 건물 소유 실태

구분(㎡)	응답 수	비율(%)
국가/ 자치단체 소유 건물	27	52.9
비영리 공익법인(재단·사단법인 등) 소유 건물	15	29.4
개인 소유 건물	6	11.8
기타(LH공사 등 소유 건물)	3	5.9
계	51	100

전체 51개를 대상으로 장난감도서관 건물 소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국가나 자치단체 소유 건물 52.9%(27개), 비영리 공익법인 소유 건물 29.4%(15개), 개인 소유 건물 11.8%(6개) 순으로 나타날 정도로 과반을 넘는 수가 국가나 자치단체 소유 건물을 장난감도서관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 공익법인의 성격을 감안해 보면, 82.3%에 육박하는 장난감도서관이 공공시설 또는 공공의 재원을 지원받는 공적시설을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난감도서관 역시 도서관법상 여타의 도서관과 같이 공공시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도서관법상의 도서관 요건 관련 실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와 제4조의 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기준, 사서배치 기준을 토대로 장난감도서관이 도서관법에서 말하는 도서관으로서의 요건을 어느 정도 수준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장난감도서관들이 도서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건물면적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장난감도서관의 건물면적 실태

구분	응답 수	비율(%)
33㎡ 이하	2	3.9
33㎡ - 66㎡	8	15.7
67㎡ - 134㎡	17	33.3
135㎡ - 264㎡	11	21.6
264㎡ 이상	13	25.5
계	51	100

전체 51개를 대상으로 장난감도서관의 건물면적 실태를 분석한 결과, 67㎡-134㎡ 33.3%(17개), 264㎡ 이상 25.5%(13개), 135㎡-264㎡ 21.6%(11개), 33㎡-66㎡ 15.7%(8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봉사대상 인구 2만 미만의 공공도서관 기준(264㎡ 이상)에 적용하는 경우 전체의 25.5%(13개)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작은도서관 기준(33㎡ 이상)에 적용하는 경우 96.1%(98개)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난감도서관들의 열람석(의자식 또는 열람, 놀이방 형태의 좌석식) 보유실태와 요구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면 <표 13>과 같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의자식과 좌석식 열람석을 동일 수의 열람석으로 간주하였다.

<표 13> 장난감도서관의 열람석 보유 실태 및 요구 수준 만족도

구 분	열람석 보유실태				요구 수준 만족도		
	응답				구 분	응답 (수, %)	
	의자식 열람석	좌석식 열람석	열람석 계 (수, %)				
6석 이하	5	3	8	7.7	매우 충분하다	3	5.9
6석-20석	36	19	55	54.0	충분하다	11	21.6
21석-30석	6	12	18	18.0	보통이다	18	35.3
31석-40석	0	7	7	6.8	미흡하다	12	23.5
41석-50석	0	3	3	2.8	매우 미흡하다	6	11.7
51석 이상	4	7	11	10.7	무응답	1	2.0
계	51	51	102	100	계	51	100

전체 51개를 대상으로 장난감도서관의 열람석 보유 실태와 요구 수준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6석-20석 54.0%, 21석-30석 18.0%, 51석 이상 10.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도서관법상의 봉사인구 2만 미만의 공공도서관 기준(60석)에 적용하는 경우 8.8% 정도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기준(6석)에 적용하는 경우 전체 장난감도서관의 92.3%가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열람석 요구 수준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보통 35.3%(18개), 미흡 23.5%(12개), 충분 21.6%(11개), 매우미흡 11.7%(6개)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하다는 도서관이 62.8%, 대체로 미흡하다는 도서관이 35.2%로 파악되었다.

장난감도서관이 영유아를 위한 장난감, 도서 등 자료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 장난감도서관의 자료보유 실태

구 분	장난감도서관 (수, %)									
	장난감(점)		놀이자료 및 정보(점)		도서자료(권)		시청각자료(점)		계	
300 이하	7	13.7	40	78.4	8	15.7	12	23.5	67	32.8
300-500	6	11.8	3	5.9	6	11.8	8	15.8	23	11.3
501-1,000	18	35.3	0	0	7	13.7	3	5.9	28	13.7
1,001-2,000	13	25.5	0	0	10	19.6	3	5.9	26	12.7
2,001 이상	7	13.7	0	0	13	25.5	2	3.9	22	10.9
없음	0	0	8	15.7	7	13.7	23	45.0	38	18.6
계	51	100	51	100	51	100	51	100	204	100

전체 51개를 대상으로 장남감도서관의 자료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300이하 32.8%, 없음 18.6%, 501-1,000 13.7%, 1,001-2,000 12.7%, 300-500 11.3%, 2,001 이상 10.9%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도서자료를 보면, 2,001권 이상 25.5%(13개), 1,001-2,000권 19.6%(10개), 300권 이하 15.7%(8개), 501-1,000권과 없음이 각각 13.7%(7개), 300-500권 11.8%(6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인구 2만 미만의 공공도서관 기준(3,000 이상)에 적용하면 9.8% 정도가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작은도서관 기준(1,000권 이상)에 적용하는 경우 전체의 45.1%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남감도서관의 연간 평균 자료증서 수와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면 <표 15>와 같다.

<표 15> 장남감도서관의 연간평균 자료증서와 자료구입비 현황

구 분	응 답 (수, %)									
	장남감		높이 자료 /정보		도서자료		시청각자료		계	
100 이하	5	9.8	18	35.3	15	29.4	20	39.2	58	28.4
101-200	10	19.6	12	23.6	10	19.6	12	23.5	44	21.6
201-300	10	19.6	4	7.8	5	9.8	3	5.9	22	10.8
301-400	4	7.8	0	0.0	2	3.9	0	0.0	6	2.9
401 이상	6	11.8	0	0.0	5	9.8	3	5.9	14	6.9
무응답	16	31.4	17	33.3	14	27.5	13	25.5	60	29.4
계	51	100.0	51	100	51	100.0	51	100.0	204	100.0

전체 51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무응답 29.4%, 100원(점) 이하 28.4%, 101-200원(점) 21.6%, 201-300원(점) 10.8%, 301원(점) 이상 10.8%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자료의 경우 100원 이하 29.4%(15개), 무응답 27.5%(14개), 101-200원 19.6%(10개), 201-300원과 401원 이상이 각각 9.8%(각 5개), 301-400원 3.9%(2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도서관법상 봉사자 수 2만 미만 공공도서관의 연간증서(권) 기준(300권 이상)에 적용해 보면, 무응답 27.5%에 달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13.7% 이상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작은도서관 기준에는 연간증서 기준이 없다).

장남감도서관들이 문헌정보학(도서관학 포함)을 전공한 사서를 어느 정도 배치하고 있는지와 사서직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표 16>과 같다.

<표 16> 장남감도서관의 사서배치 실태

사서직 배치 실태			사서직을 배치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구 분	응 답 (수, %)		구 분	응 답 (수, %)	
사서직원 있음	7	13.7	직원정원에 사서직이 배정되어 있지 않아서	21	28.8
사서직원 없음	42	82.4	사서직이 담당할 직무가 없어서	35	47.9
무응답	2	3.9	예산부족으로 사서직을 채용할 수 없어서	17	23.3
계	51	100.0	계	73	100.0

전체 51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서직원을 배치한 장난감도서관은 13.7%(7개)에 불과한 반면, 배치하지 않은 도서관은 82.4%(42개)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이 사서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서직을 배치하지 않은 이유로는 사서직이 담당할 직무가 없어서 47.9%(35개), 직원 정원에 사서직이 배정되어 있지 않아서 28.8%(21개), 예산부족으로 사서직을 채용할 수 없어서 23.3%(17개) 순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도서를 1,000권 이상 갖추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이 전체의 45.1%에 달하고 있음에도, 또 상당 수 도서관이 시청각자료 등 도서관적 자료를 갖추고 있음에도, 사서직이 담당할 직무가 없다는 것과 이를 이유로 사서직을 채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 여타 도서관적 요소 관련 실태

장난감도서관들이 언제 설립되었는지 연도별 설립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면 <표 17>과 같다.

<표 17> 연도별 장난감도서관 설립 현황

구분	응답 (수, %)	
2002	3	5.9
2007	6	11.8
2008	3	5.9
2009	12	23.5
2010	4	7.8
2011	15	29.4
2012	8	15.7
계	51	100

전체 51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11년 29.4%, 2009년 23.5%, 2012년 15.7%, 2007년 11.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대체로 2007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약 6년간에 걸쳐 장난감도서관이 집중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난감도서관을 월 평균 몇 명의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표 18>과 같다.

<표 18> 장난감 도서관의 월 평균 영유아 이용 실태

구분	응답 (수, %)	
100 이하	9	17.6
101-300	17	33.4
301 이상	25	49.0
계	51	100

전체 51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01명 이상 49.0%(25개), 101-300명 33.4%(17개), 100명 이하 17.6%(9개)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301명 이상의 이용자를 가진 장난감도서관이 49.0%에 달할 정도로 이용률이 높은 것은 자녀들의 장난감 구입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다양한 장난감과 이를 매개로 한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장난감도서관의 연간 평균 예산을 조사하였으나, 어떤 곳은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을, 어떤 곳은 인건비를 제외한 전체 예산을, 어떤 곳은 자료구입비만을 기재하는 등 분석에 어려움이 있어 제외하였다. 다만 대체로 가늠할 수 있었던 것은 전체 51개 장난감도서관 중에서 연간 5천만원 미만 19.6%(10개), 5천만원-1억 이하 54.9%(28개), 1억 이상 25.5%(13개) 정도로 가늠되었다.

장난감도서관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와 필요 예산 확보 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표 19>와 같다.

<표 19> 장난감 도서관의 예산 확보 방법 및 확보 수준

예산확보 방법(복수응답)			예산확보 수준		
구분	응답 (수, %)		구분	응답 (수, %)	
국가, 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확보	33	33.3	필요 예산의 100% 확보	9	17.6
비영리 공익법인 후원을 통해 확보	21	21.2	필요 예산의 90% 확보	3	5.9
개인 후원을 통해 확보	6	6.1	필요 예산의 80% 확보	10	19.6
이용자의 연회비와 장난감대여료 등을 통해 확보	39	39.4	필요 예산의 70% 확보	29	56.9
계	99	100	계	51	100

전체 51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예산 확보 방법(복수응답)은 이용자의 연회비와 장난감대여료 등을 통해 확보 39.4%(39개), 국가, 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확보 33.3%(33개), 비영리 공익법인 후원을 통해 확보 21.2%(21개)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장난감도서관이 전체 소요예산의 30% 정도는 국가, 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확보하고, 약 70%의 예산은 후원, 연회비와 장난감 대여료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산 확보 수준의 경우 전체의 56.9%가 필요 예산의 70%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상당수 장난감도서관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필요 예산의 100%를 확보하고 있는 곳은 17.6%에 불과하다).

장난감도서관들이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는지와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경우 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표 20>과 같다.

<표 20> 장난감도서관의 자원봉사 운영 실태

자원봉사자 활용여부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일(복수응답)		
구분	응답 (수, %)		구분	응답 (수, %)	
예	39	76.5	영유아 장난감 수집 및 대여	18	25.0
			영유아 놀이 자료 및 정보 수집, 제공	3	4.2
			영유아 도서자료 수집, 제공	6	8.3
아니오	12	23.5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12	16.7
			시청각자료 수집, 제공	3	4.2
			문화 활동 서비스	9	12.5
계	51	100	기타(장난감 소독 및 세척, 환경정비)	21	29.1
			계	72	100

전체 51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장난감도서관은 76.5%(39개), 활용하지 않는 곳은 23.5%(12개)로 나타나,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일(복수응답)은 기타(장난감 소독 및 세척, 환경정비) 29.1%(21개), 영유아 장난감 수집 및 대여 25.0%(18개),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16.7%(12개), 문화 활동 서비스 12.5%(9개), 영유아 도서자료 수집, 제공 8.3%(6개) 순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난감도서관의 법적 위상과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장난감도서관의 정체성과 법적 위상을 관련법과 선행 연구를 통해 고찰하고, 도서관법상의 도서관에 대한 정의와 기준 등을 토대로 장난감도서관의 정체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다.

결과, 첫째 도서관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①장난감도서관의 설립 법적 근거를 살핀 결과 전체 51개 장난감도서관 중, 도서관법(법에 의해 등록)에 의해 설립된 곳은 9.8%(5개)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자치단체의 장난감도서관 조례[45%(23개)] 또는 법적 제도와 관계없이 설립[39.2%(20개)]될 정도로 여타의 도서관과 설립 법적 근거에 차이가 있었다. ②장난감도서관의 목적과 기능을 살핀 결과, 82.4%가 장난감 대여와 놀이 자료 제공 및 프로그램 보급, 문화활동 서비스로 나타날 정도로 도서관법 제2조의 1, 2, 3항의 정의에 따른 동 법에서 말하는 도서관과는 그 정체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③장난감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 주체를 분석한 결과, 전체 51개 중 64.7% 비영리 공익법인, 국가, 자치단체가 29.4%로 나타나, 대부분 공공도서관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④장난감도서관 건물 소유자의 경우에도 전체 51개 중, 국가나 자치단체 소유 건물이 52.9%에 달할 정도로 과반을 넘는 곳이 공공시설을 도서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와 제4조의 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기준, 사서배치 기준을 토대로 도서관법상의 도서관 요건 관련 실태를 살핀 결과, ①건물면적의 경우 전체 51개 중 봉사대상인 인구 2만 미만의 공공도서관 기준(264제곱미터 이상)에 적용하는 경우 전체의 25.5%가, 작은도서관 기준(33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하는 경우 96.1%(98개)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②열람석의 경우(의자식 또는 열람, 놀이방 형태의 좌석식), 전체 51개 중 봉사인구 2만 미만의 공공도서관 기준(60석)에 적용하는 경우 8.8% 정도가, 작은도서관 기준(6석)에 적용하는 경우 92.3%가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열람석 요구 수준에 대한 만족

도 조사에서는 대체로 만족하다는 도서관이 62.8%, 대체로 미흡하다는 도서관이 35.2%로 파악되었다. ③장난감도서관의 자료보유 실태의 경우, 전체적으로 장난감 확보율과 달리 도서 등 여타의 자료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도서자료의 경우 인구 2만 미만의 공공도서관 기준(3,000 이상)에 적용하면 9.8% 정도가 적합한 것으로, 작은도서관 기준(1,000권 이상)에 적용하는 경우 45.1%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④연간 평균 자료증서 실태를 보면, 전체 51개 중 봉사자 수 2만 미만 공공도서관의 연간증서(권) 기준(300권 이상)에 적용할 경우 약 13.7% 이상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작은도서관 기준에는 연간증서 기준이 없다.) ⑤장난감도서관의 사서배치 실태를 보면, 전체 51개 중 사서직원을 배치한 장난감도서관은 13.7%(7개)에 불과한 반면, 배치하지 않은 도서관은 82.4%(42개)로 대부분 사서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서직을 배치하지 않은 이유로는 사서직이 담당할 직무가 없어서 47.9%, 직원의 정원에 사서직이 배정되어 있지 않아서 28.8%, 예산부족으로 사서직을 채용할 수 없어서 23.3%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타 도서관적 요소 관련 실태의 경우, ①연도별 장난감도서관 설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2007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약 6년간에 걸쳐 장난감도서관이 집중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②장난감 도서관의 월 평균 영유아 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51개 중 301명 이상 49.0%(25개), 101-300명 33.4%(17개), 100명 이하 17.6%(9개)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301명 이상의 이용자를 가진 장난감도서관이 49.0%에 달할 정도로 이용률이 높았다. ③예산 확보 방법 및 확보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51개 중, 이용자의 연회비와 장난감대여료 등을 통해 확보 39.4%(39개), 국가, 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확보 33.3%(33개), 비영리 공익법인 후원을 통해 확보 21.2%(21개)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장난감도서관이 전체 소요 예산의 30% 정도는 국가, 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확보하고, 약 70%의 예산은 후원, 연회비와 장난감 대여료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산확보 수준의 경우 전체의 56.9%가 필요 예산의 70%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⑤자원봉사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51개 중 76.5%가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일은 장난감 소독 및 세척, 환경정비 등이 29.1%, 영유아 장난감 수집 및 대여 25.0%,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16.7%, 문화 활동 서비스 12.5%, 영유아 도서자료 수집, 제공 8.3%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해 보면, 첫째 정체성과 관련하여 영유아법 등을 근거로 제정된 장난감도서관 관련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등 법적 위상을 갖고 있으나, 도서관법과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가 도서관법에 근거되지 않고 자료와 서비스 역시 관련 조례에서 도서 등 도서관법상의 도서관자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실태는 미흡하다.

둘째 도서관법은 시설과 자료, 사서배치 기준 등 도서관의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요건을 갖춘 후 법에 의해 등록하여 법적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하지만 장난감도서관은 도서

관법상의 도서관 요건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 대부분의 도서관이 사서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다.

셋째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의 보육, 복지, 부모들의 경제적 측면에서 유용성이 높은 사회적 시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난감도서관이 소요 재원을 70%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충분한 인적자원, 자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는 등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언하면, 첫째 정체성과 관련하여, 장난감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들이 제정하는 장난감도서관 관련 조례의 법적 근거에 도서관법을 포함하는 것과 도서관법에서 장난감도서관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장난감도서관 관련 조례의 근거에서 도서관법을 포함할 것과 도서관법에서 장난감도서관 개념도입을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도서관법상의 법적 위상과 관련하여, 장난감도서관이 도서관법상의 법적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동법이 정하는 시설과 자료, 사서배치 기준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장난감도서관들이 도서관법에 의해 등록할 것과 이를 위한 기준 마련 등을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장난감도서관이 그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요구되는 적합한 시설과 인건비, 자료구입비, 운영비 등 예산이 필요한 만큼, 소요되는 필요예산을 자치단체가 현실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main.html>> [인용 2013. 7. 10].
- 김수정. 전국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실태와 발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 2013.
- 도쟁이 홈페이지. <http://203.241.185.12/asd/read.cgi?board=Dic&y__number=10347> [인용 2013. 6. 22].
- 동윤진. 어린이 도서관과 장난감 도서관에 대한 실태 및 부모인식조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 200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query=%EC%9E%A5%EB%82%9C%EA%B0%90%EB%8F%84%EC%84%9C%EA%B4%80>> [cited 2013. 6. 26].

- 유해미, 양미선, 송신영. 지역사회내 육아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2012.
- 일본도서관협회 장애인서비스위원회 편, 도서관운동연구회 역.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서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00.
- 장경희. “한국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초 연구.” 부모교육연구, 5권, 2호(2008), pp.79-100.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홈페이지. <<http://welfare.childfund.or.kr/inBiz/toyLibrary.do>> [인용 2013. 6. 30].
- 최은희. 놀이감 대여 프로그램이 어머니-영아 상호작용과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2011.
- 沈劍娜. “儿童玩具圖書館的發展及其社會服務功能的探討.” 圖書館理論與實踐, 2013. pp.16-18.
- Dockrell, Julie and wilkinson, J. Eric. “Toy libraries: what's in a nam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Vol.49, No.1(May 1989), pp.27-36.
- ITLA Home page. <<http://www.itla-toylibraries.org/pages/home/>> [인용 2013. 7. 1].
- Malik, Abida, and Csikar, Julia. Sure Start West Bowling Local Evaluation of Toy Library. <<http://www.ness.bbk.ac.uk/support/local-evaluation-findings/documents/1080.pdf>> [cited 2013. 6. 28].
- Mayfield, Margie I. “Toy libraries: Promoting play, toys, and family support internationall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Vol.87, Issue1(January 1993), pp.1-13.
- Moore, Julia E. *A History of Toy Lending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Since 1935*, Master's Research Paper, Kent State Universit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95.
- National Association of *Toy and Leisure Libraries. Toy Libraries their benefits for children, families and communities*. London: Capacity and Play Matters, 2007. <<http://www.ncb.org.uk/media/195173/capacityreportjune07.pdf>> [cited 2013. 6. 20].
- Powell, Robot and Seaton, Nia. *A Treasure Chest of Service : the Role of Toy Libraries Within Play Policy in Wales*. Slough: NFER, 2007.
- WAATL. *A Guide to Starting and Running a Community-Based Toy Library*. 2010, p.4-5. <<http://www.toylibrary.asn.au/downloads/Manual-setting-up-and-running-a-toy-library.pdf>> [cited 2013. 6. 24].
- Wikipedia Home page. <http://en.wikipedia.org/wiki/Toy_library> [cited 2013. 6. 24].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im, Soo-Jung. *Study of the operations and the development plan on Toy Library in Korea*. M.A.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Choi, Eun Hee. *The Effects If the Rental Program of Toys on the Interaction between Mothers and Infants and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Infants*, Ph.D. Wonkwang University.
- Disability Services Commission of Japan Library Association service, library study group translation. *Library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eoul: Korea Blind Union, 2000.
- Dong, yoon Jin, *An investigation of parents' recognition and reality concerning toy libraries and children libraries*. M.D. thisis. Soongsil University.
- Jang, Kyung Hee. "A research on management of toy library in Korea." *Parents Education and Research*, Vol.5, No.2(2008), pp.79-100.
- Shen, Jian Na. "Children's toys library development and their social service function." *Library Theory and Practice*: 2013.
- Yu, Hae Mi, yang, Mi Seon, Song, Sin Young. *Community Care Support Service Delivery Improvement Status and Research*. Seoul: Parenting Policy Institute, 2012.